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정 2010. 04. 26. 규칙 제29호
개정 2021. 11. 19. 규칙 제14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속임직원(이하 “소속임직원”이라 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직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 및 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감사업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원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신고자의 신분보장) 제3조제1항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26조와 관련 법규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9.>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 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개정 2021. 11. 19.>

② 고발은 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감사업무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취업규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9조(고발처리 상황 보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감사실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한 경우 : 고발처,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혐의 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
3.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부 칙 (2010. 04. 26. 규칙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1. 19. 규칙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고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혐의 사실 고발처리 상황부

범죄혐의 사실 보고 내용				범죄혐의 사실 처리 내용			비고
일 자	보고자	범죄 혐의 사실		일자	고발처	조치결과	
		관련자	혐의사실				

※ 1. “조치결과”에는 고발후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수사결과를 요약 기재
2. “비고”란에는 범죄사실이 보고되었으나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보고

확인자 직 성명 (인)
작성자 직 성명 (인)

일련번호	건 명	범죄내용	인적사항 (소속, 직, 성명)	적발일자	고발일자	미고발사유
1						
2						
3						
4						

<작성요령>

1. 건명은 금품수수, 공금횡·유용, 직무유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 고발한 경우에는 미고발사유란에 행정·형사 등 조치결과를 기재
3. 미고발한 경우에는 미고발 사유를 육하원칙으로 기재